

#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4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응 등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'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' 설치·운영 필요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,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
- 추진 필요성
  -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
  - 재계약 추진을 통한 지속적·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심층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

**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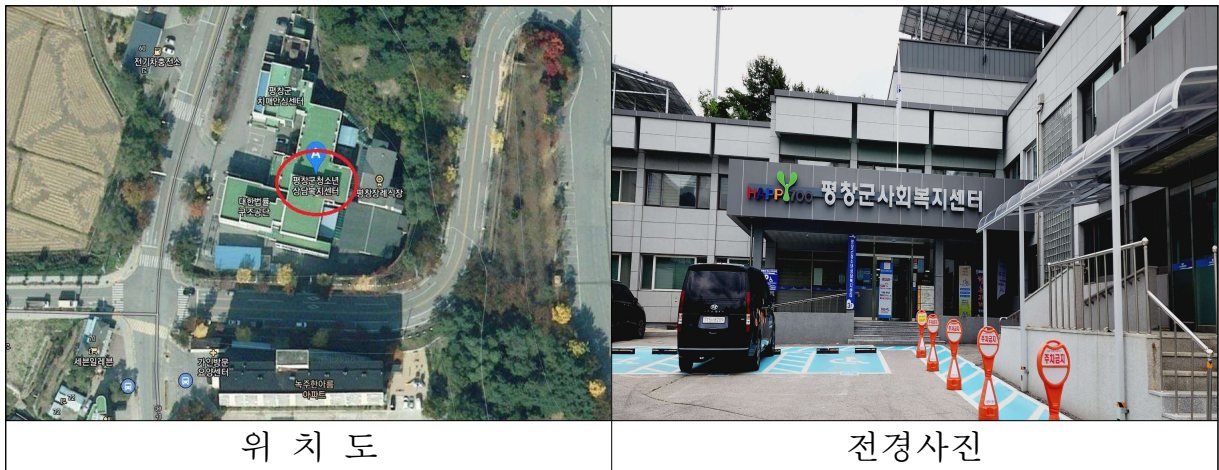
- 시설 및 수탁재산 관리 운영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-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,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

**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**

시설명	위치	시설규모	시설구조	운영인력
평창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	평창읍 종부로 61 (평창군사회 복지센터 3층)	건축 연면적 412.29m <sup>2</sup>	사무실 1, 상담실 5, 교육실 1, 상담대기실 1	7명 (센터장 1, 상담지원 2, 안전망 2, 동반자 2)

**※ ‘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’ 공동이용**

-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**마. 민간위탁기간**

- 2024. 7. 20. ~ 2026. 8. 13.(2년 25일)

**※ 계약종료 기간 :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동일**

**바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**

- 선정방법 : 성과평가 및 심사위원회 적격 심의에 따른 재계약
- 관련근거 :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2조의2

**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**

- 민간위탁금 : 220,188천원(군비)
- 보조사업비 : 153,462천원(국 71,331, 도 2,160, 군 79,971)

(단위:천원)

구분		합계	국비	도비	군비
합계		373,650	71,331	2,160	300,159
위탁금	상담지원 운영	220,188	-	-	220,188
보조사업비	안전망 구축	100,102	50,051	-	50,051
	청소년 동반자 운영	42,560	21,280	-	21,280
	처우개선 수당 지원	10,800	-	2,160	8,640

※ 매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금 결정

**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**

-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 -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·단체에서 위탁운영 적합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 - 법률로 정한 청소년단체의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
- 경제적 효율성
  -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겸임 및 시설 공동이용으로 예산 절감 가능
  - 직원 인건비 등 군 직영 운영과 예산 소요액 같으나, 전문적

-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낭비 요소 해소
-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 - 누적된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 -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로 사업 성과 제고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 - 분기별(연 4회) 예산 집행 점검 추진,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(연 1회), 여성가족부 종합평가(3년 주기)로 투명성 확보
-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
  - 청소년의 우울,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발생 시 통합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로 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추진 가능

#### 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평가개요
  - 평가범위 : 2021. 7. 20. ~ 2023. 9. 30.
  - 평가내용 : 기관 및 사업 운영 전반, 20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지표 반영
- 평가점수 : 90점(우수)

합계	기관운영관리				사업운영관리		
	센터기반 조성	유관기관 협력	예산운영	인력관리	위기청소년 개입	홍보 노력도	상담지원 사업 등
90	8	4	13	13	33	5	14

- 종합의견

- 최초 설립·운영으로 사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 실적 등 전반적 사업 실적 우수
-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 가능(팀원 자격 기준 준수 등)

#### 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### ○ 추진경과

-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(최초) : 2021. 7. 20.
-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종합성과평가 : 2023. 12. 26.
-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평가 결과 공개 : 2023. 12. 29.
-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: 2023. 12. 29.
-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: 2024. 2. 29.

##### ○ 관련자료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·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겸임 현황
  - 겸임 : 도, 11개 시·군(춘천, 원주, 강릉, 동해, 태백, 속초, 삼척, 홍천, 영월, 정선, 철원)
 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: 1개 군(횡성)
 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·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: 5개 군(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)

##### ○ 관련법령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
- 「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**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6조(운영 및 위탁)**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를 따른다.

③ 군수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